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8
----------	------

2013년 7월 12일
도시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4일, 서영갑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2013년 7월 1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영갑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행정2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2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기존의 행정2부시장에서 공동위원장(행정2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 의견조정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종 식)

■ 개요

- 본 안은 2013년 6월 14일 서영갑 의원(찬성자 10명)이 발의하여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행정1, 민간2)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청계천 업무 관련한 실·국·본부장으로 포괄 규정하며, 분과위원회간 의견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제안배경

-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청계천의 역사성/생태성/

활용성 등을 높이고자 2012년 3월(2012.3.23)에 발족하여 운영해 왔고, 2012년 9월(2012.9.28)에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¹⁾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례 개정 전에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공동위원장 체계(행정2부시장, 민간 2인)와 분과위원회 구성 등임(별첨 2).
- 그러나, 2012년 조례 개정시, 행정2부시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규정하면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던 위원회의 운영과 조례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²⁾, 민간위원들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위원회의 특성을 들어 민·관 공동위원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원회의 실제 운영과 조례 규정상의 괴리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가. 공동위원장(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

- 서울시의 시민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³⁾,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이 변경되었고,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규정(조례 제12조~제16조) 등이 추가되었음

2) 위원회 발족 후 민간 위원장 2인이 교대로 전체 회의를 주도해 왔던 상황에서, 행정2부시장의 단독 위원장 체계는 위원회 실제 운영과 괴리되어 위원들의 건의가 지속되어 왔음

3) 1995년 7월 1일 민선1기로 조순시장 취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정의 목표가 변화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음.

- 서울시 최초의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서⁴⁾,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의 공동위원장(서울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과 기획조정위원회 및 3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었음.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1998),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2009), 희망은돌시민기획위원회(2012) 등의 시민위원회가 설치되었음(별첨 3).
- 시민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 위원회보다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를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대부분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 그러나, 청계천시민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체로 민간위원이나 민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는 일반적인 운영 사례와 다르고, 위원회 발족 후 민간위원장 2인이 교대로 전체 회의를 주도해 왔던 상황에서⁵⁾, 행정2부시장이 단독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로 보임.

4)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시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시장의 환경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995년 11월에 구성하여 현재 9기(12.11.1~14.10.31)가 운영 중에 있음.

5) 청계천시민위원회는 '12.3.23 발족하여' 12.9.28(조례 개정 전까지)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전체회의를 5회 운영하였음.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장2명(남1명, 여1명)과 당연직위원장1명(행정2부시장)으로 구성하였고 회의 운영은 민간위원장2명이 교대로 청계천 개선·보완에 대한 주제로 주도하였음.

- 따라서 민간위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민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아 현재의 행정2부시장 단독 위원장에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동위원장 3인 중 민간 공동위원장 2인은 남자 1인, 여자 1인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여성의 행정 참여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운영의 합리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또는 위원회 세칙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기관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널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정책판단을 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16조의2)⁶⁾.
- 따라서, 집행부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후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그러나,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조례를 정비하여 결과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였음.

6)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2년 조례 개정시,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되어, 정작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추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당연직 위원의 포괄적 규정(안 제12조 제4항 제1호)

-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해서는 생태, 환경, 도시, 공원, 역사, 산업 등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당연직 위원을 특정 실·국·본부장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업무관련 실·국·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포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소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 2)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는 전체 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분과위원회간 이견을 조정하고 필요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하여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소위원회 신설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⁷⁾.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와 당연직 위원의 포괄 규정, 소위원회 신설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로서, 시민위원회의 특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7)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바,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간 의견을 조정하며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12년 조례 개정시, 법적근거 없이 청계천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던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바와 같이, 추후 집행부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를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2부시장으로”를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으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제1호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 :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를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7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10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계천의 시설평가,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 및 청계천의 이용 촉진 등 관련 업

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소관부서에서 운영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각 분과와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과”를 “생태·환경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문화재과”를 “역사·문화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균형발전과”를 “도시·제도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도시안전실장</p> <p>2. 도시계획국장</p> <p>3.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p> <p>4.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p> <p>5. 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⑤ (생략)</p>	<p>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당연직 위원</u> : 청계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p> <p><삭 제></p> <p><삭 제></p> <p>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p> <p>3. 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u></p> <p>1~2. (생략)</p> <p>③~⑥ (생략)</p>	<p>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 <u>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③~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u>7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u>청계천의 시설평가,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 및 청계천의 이용 촉진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소관부서에서 운영한다.</u></p> <p>1.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과</p> <p>2.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문화재과</p>	<p>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u>10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u>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각 분과와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u></p> <p>1. 생태·환경 분과위원회</p> <p>2. 역사·문화 분과위원회</p>

현 행	개 정 안
<p>3.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균형발전과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 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전의 심도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p>

[별첨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68호, 2012.9.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33-3892

제1조(목적) (개정 2009.09.29)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9.09)

1. 청계광장
2. 수경시설
3. 수변무대
4. 휴게시설
5. 자연학습장 등 그 밖의 시설 (개정 2009.09.29)

제3조(이용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제2조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09.09.29)

제5조(사용신청)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청계천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1. 이용시설 설치목적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정 2009.09.29)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개정 2009.09.29)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제7조(허가순위) 시장은 사용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사용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신청순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09.29)
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개정 2009.09.29)
3. 어린이·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관련행사 (개정 2009.09.29)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09.29)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신설 2009.09.29)
2. 공연, 전시회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등 (신설 2009.09.29)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 ③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신설 2009.09.29)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이용시설 사용 후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 ② 시장은 이용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개정 2009.09.29)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개정 2012.1.5>
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5>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 2012.9.28)

1.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
 2.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 추진상황 평가
 3.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 개선
 4. 수표교, 오관수문 등 복원
 5. 기타 청계천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안전실장
 2. 도시계획국장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본조 신설 2012.9.28)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계천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7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9.28)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청계천의 시설평가,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 및 청계천의 이용 촉진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소관부서에서 운영한다.

1.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과

2.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문화재과

3.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균형발전과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소속 부서의 과장 및 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계천(T/F팀)추진반을 운영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계천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본조 신설 2012.9.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2.9.28)

부칙 <제5368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등) ① 이 운영세칙은 시장방침 제54호(2012.2.28)에 의거 청계천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계천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복원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연구·검토·분석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 하는 청계천으로 개선·보완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청계천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역할 등)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청계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도시·제도등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청계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발제 및 토론, 안전발의, 심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한다.

제3조(구성 등)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은 청계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도시·제도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시민, 학계전문가, 시의원)과 내부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수는 25인 내외로 한다.

제4조(위원장 선임,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 ①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장(행정2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장(민간2인)을 둔다.
- ② 위촉직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
- ③ 임기와 해촉 등은 내부방침에 따른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역사·문화분과, 생태·환경분과, 도시·제도분과 등)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등)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안건의 상정 등)

- ① 회의안건은 위원발의안건, 심의, 자문 또는 보고안건으로 구분 한다.
- ②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심의, 자문 또는 보고안건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고사항은 3일전까지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안전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의결 정족수 등 회의진행)

- ①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안전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전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사를 두며 속기사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속기사는 회의진행 및 속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하도록 의결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2. 4. 27.>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서울시의 시민위원회 전체 현황

연번	위원회 명칭	설치연도 (실제구성)	근거법 (상위법령, 조례)	설치배경 및 목적	성격	위원장 구성	조직 구성	위원 구성	연간회의 개최수	간사,서기
1	희망온돌 시민기획 위원회	2012.12.31 (11.11월)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소외받는 사각 지대를 지원하는 희망온돌사업 추진시 민간이 참여하여 관 주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복지 거버넌스 실현	자문	위원중호선 (1명) -현재, 민간위원장	· 3개소위원회 - 기부나눔 - 풀뿌리축진 - 협동자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자격 1.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그 밖에 시민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 '11년 6회 · '12년 12회 · '13년 1회	
2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2009.3.28 ('09.4월)	·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찾기에 필요한 활동, 자료 구축, 실태파악, 법률자문 등을 지원	자문	위원중호선 (1명) -현재, 민간위원장	· 3개분과위원회 - 기획분과 - 학술정보분과 - 홍보분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 자격 1.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 교수, 전문가, 시민 3.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 ·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11년 1회 · '12년 4회 · '13년 0회	· 간사: 역사문화재과장
3	청계천 시민위원회	2012.9.28 ('12.3.23)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 및 활용 정책수립 및 실행	자문	행정2부시장	· 3개분과위원회 - 생태환경 - 역사문화 - 도시제도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자격 1.도시안전실장 2.도시계획국장 3.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공원환경, 생태,자연성회복,수질,도시,역사등	· '12년 7회 · '13년 1회	· 간사 : 하천관리과장 · 서기 : 청계천관리팀장

연번	위원회 명칭	설치연도 (실제구성)	근거법 (상위법령, 조례)	설치배경 및 목적	성격	위원장 구성	조직 구성	위원 구성	연간회의 개최수	간사,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관한전문지식및실무경험이있는사람 · 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4	시민감사위원회	2012.7.30 (12.10.5)	· 서울특별시 · 시민감사위원회 · 조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 등에 대한 자문, 심의	자문+ 심의	위원중호선 (1명) -현재, 민간위원장	· 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9명 이내 · 자격 1.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위원 2.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3.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자격 이있는사람 4.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 학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 6.그 밖에 감사업무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사람 7.서울특별시 감사관(당연직) · 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 '12년 2회 · '13년 1회	· 간사 : 감사담당관
5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1998.3.10	· 서울특별시 · 버스정책 · 시민위원회 · 조례	시내버스 관련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보, 시내버스 서비 스 개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심의+ 자문	행정1부시장	· 5개분과위원회 - 버스정책 - 노선조정 - 경영합리화 - 서비스시설개선 - 시민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0인이내 · 자격 1.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등 2.교통,소비자보호,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3.언론계,법조계,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4.시의회의원 5.중앙부처,경찰 등 유관기관대표 6.버스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대표 7.관계공무원 	· '11년 6회 · '12년 3회 · '13년 3회	· 간사 : 버스정책과장 · 서기 :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연번	위원회 명칭	설치연도 (실제구성)	근거법 (상위법령, 조례)	설치배경 및 목적	성격	위원장 구성	조직 구성	위원 구성	연간회의 개최수	간사,서기
								· 위원 임기 1년, 연임 가능		
6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2009.7.30 ('09.9.1)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심광장(서울 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심의	위원중호선 (1명) -현재, 민간위원장	· 본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자격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2명 4. 서울특별시 3급이상 공무원 ·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11년 3회 · '12년 6회 · '13년 0회	· 간사 : 총무과장 · 서기 : 청사운영팀장
7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1996.5.20 ('95.11월)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의 제21의 실천 및 이행 사항점검 등 국제연합지속 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심의+자문	공동위원장 (3명) - 시장 - 위촉위원 중 호선 (시민대표 1, 기업대표1)	· 기획조정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순환분과, 환경보건분과 ('12. 11월 개편)	· 위원장 포함 100인 이내 · 자격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후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공원녹지국장·도시계획국장·도시안전실장 2. 위촉위원: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11년 129회 · '12년 74회 · '13년 43회	· 간사 : 환경정책과장 · 서기 : 환경협력팀장